

# 서울신내역 시티프라디움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

## ■ 서류제출 안내 (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.)

- ▶ 제출대상 :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
- ▶ 제출기간 : 2021.01.14(목) ~ 22(금)
- ▶ 제출장소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50 (서울신내역 시티프라디움 견본주택)
- ▶ 제출방법 : 우편접수 (등기우편)

※ 서류제출 시 필히 당첨 동·호수 및 당첨자 성함을 기재 바랍니다.  
 ※ 우편접수 완료 시 대상자들에게 접수 확인 문자 안내 예정입니다.(우편 도착 및 검수로 인해 문자 안내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.)  
 ※ 주소 오기입으로 인한 오발송 또는 미수취에 대한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 
 ※ 제출 기간 내에 서류 미제출한 세대는 계약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## ■ 구비서류 안내 (※ 인감도장 및 신분증은 계약시 지참)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
	필수	추가			
공동서류 (일반 / 특별공급)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• 용도 : 아파트 임대계약용(본인 발급용)	
	○		인감도장	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, 대리인 신청 불가	
	○		신분증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	
	○		본인 주민등록표 등본	• 이름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	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• 이름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	
	○		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	•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	
	○		추가 개별통지 서류	•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(개별통지)	
특별공급 유형별	공동서류	○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•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	
		○	비사업자확인각서	• 견본주택 비치	
		○	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	• 소득 관련 가구원 수 포함일 경우	
	청년	○	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	• 본인이 소득이 있을 경우	
		○	부모의 소득 관련서류	• 본인이 소득이 없을 경우	
	신혼부부	혼인 상태인 경우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• 혼인신고일 확인서,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"상세" 로 발급
			○	소득 관련 서류	•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
		혼인 예정인 경우	○	결혼 확인 서류	• 서약서(견본주택 비치),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
			○	예비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	• 이름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
고령자	○	소득 관련 서류	•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		
	○	소득 관련 서류	•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		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(배우자 포함)	○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(계약자)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용)		
	○	위임장	• 견본주택 비치, 계약자 인감도장 날인		
	○	대리인 신분증, 인장	•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		

- 상기 모든 증명서류(신청 시 구비서류)는 임차인 모집공고일(2020.12.29(화)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주민등록 등·초본 발급 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
- 견본주택 비치 서류는 계약시 작성 예정입니다.

## ■ 특별공급(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)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•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, 재직증명서	• 해당직장 • 세무서
	신규취업자	•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, 재직증명서	•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	•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• 사업자등록증	•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	•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•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	• 세무서
	신규사업자	•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(부분) • 사업자등록증	• 국민연금 관리공단 • 세무서
	법인사업자	• 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• 법인등기부등본	• 세무서
	보험모집인	•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	• 세무서
	방문판매원	•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	•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수급자		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• 주민센터
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		•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획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 지급 조서(직인날인)	• 해당직장
무직자		• 비사업자 확인 각서 (견본주택 비치) •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 소득입증서류 필요	• 접수장소

- ※ 사업주체에서 적격자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-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(의료)보험증이 없는 경우 :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(직업군인 제외)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, 군 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.
  - 종교기관(교회, 사찰 등)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된 경우 :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.
  -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: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,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.
  -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1월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.
  -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: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,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.